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사법원법」 개정(2022. 7. 1. 시행)에 따라 성폭력 사건 등 일부 범죄의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위 범죄에 대한 기관 상호 간 징계등 요청 및 관계자료 통보를 위하여 상호 간 자료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등 요청 및 관계자료 통보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사건 등 일부 범죄의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군인 징계조사 시 관계기관의 자료를 협조받을 필요가 있음.
- 2) 이에 기존 군 내부 기관 간 협조에 더하여 민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하여도 규정함.
- 3) 민간 기관의 징계등 요청 및 관계자료 제공을 통해 군 내 징계절차를 적시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6조,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를 발견한 행정기관의 장 및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 징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징계의결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2항 제2호의 경우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및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등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나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① 법 제56조,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를 발견한 행정기관의 장 및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 징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징계의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③ (현행과 같음)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 제2호의 경우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및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 락 처	(02) 748 - 6818